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 침해구제제1위원회

### 결 정

사 건 21진정0122500 경찰의 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처분 사유 미고지  
진 정 인 000  
피진정인 000(000000경찰서)

### 주 문

1. 00000경찰서장에게, 진정인에 대해서 불송치 및 일부송치이유를 신속히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조치할 것과,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 할 것, 피진정인을 포함한 수사관들에게 불송치 결정시 이유 통지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경찰청장에게,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사례를 각 경찰서에 전파할 것을 권고합니다.

### 이 유

#### 1. 진정요지

00000경찰서는 진정인이 2020. 5.경 고소한 사기사건을 2021. 2.경 일부 송치 및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진정인은 수사결과에 불복하기 위해 그 이

유를 알고자 수사결과에 대한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줄 것을 피진정인에게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고소인에게 아무런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 나. 피진정인

#### 1) 사건처리 경과

진정인 고소 사건에 대해서 2020. 11. 11. 피의자 4명 중 1명에 대해서 일부기소, 3명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OOOO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같은 날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후 2020. 11. 18. 사건 담당 검사로부터 재지휘를 받아 대상 사건을 다시 수사하였고, 2021. 2. 16. 이전 송치내용과 동일하게 일부송치·불송치 결정하여 수사결과 통지서를 진정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진정인이 2021. 3. 4.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기에 다음날 OOOO지방검찰청으로 이의신청서를 송부하였고, 진정인에게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 2) 이유를 서면통지하지 않은 이유

진정인은 2020. 11. 27. 진술서, 12. 22. 탄원서, 2021. 2. 2. 탄원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일부기소 및 불기소 사유에 대해 통지하여 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진정인에 대한 사건처리결과 통지

(2020. 11. 11.) 후 담당검사의 재지휘(2020. 11. 18.)로 수사가 계속 중이었기에 일부기소 및 불기소 등 결과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없었다.

###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사건처리결과통지(2020. 11. 11.), 수사결과통지서(2021. 2. 16.),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2021. 3. 4.)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0. 5.경 OOOOO경찰서에 진정 외 OOO, OOO, OOO, OOO에 대해서 피해금 1억2천만원 상당의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OOO경찰서는 2020. 5. 25. 이 사건을 접수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20. 8. 14. 전임자로부터 이 사건을 인수받아 담당하였고, 2020. 11. 11. 진정 외 사기사건 피의자 OOO는 일부기소의견으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OOOO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진정인에게 송부하였다.

다. OOOO지방검찰청은 2020. 11. 18. 위 사기사건에 대해서 재수사하도록 지휘하였고, 피진정인은 이에 따라서 재수사를 하였다.

라. 진정인은 위 사건처리결과 통지서를 받고, 우편으로 OOO경찰서에 진

술서 2부와 OOOO지방검찰청에 탄원서 1부를 제출하였다. 피진정인은 2020. 11. 27. 이를 접수하여 기록에 첨부하였다. 이후 진정인이 다시 우편으로 제출한 탄원서를 피진정인은 2020. 12. 22. 접수하여 기록에 첨부하였다. 진정인이 다시 우편으로 OOO경찰서에 탄원서 1부, OOOO지방검찰청에 탄원서 1부를 보내어 피진정인이 2021. 2. 2. 이를 기록에 첨부하였다.

마. 피진정인은 2021. 2. 16. 피의자 OOO에 대해서 일부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피의자 OOO, OOO, OOO에 대해서 불송치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였다.

사. 진정인은 위 수사결과 통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진정인은 2021. 3. 4. 이를 접수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OO지방검찰청으로 송부하고 이를 진정인에게 통지하였다.

아. 진정인은 2021. 4.경 불송치 이유를 요청하는 내용을 요청하는 우편들을 OOOOO경찰서에 발송하였고, 피진정인은 2021. 4. 8.과 2021. 4. 12. 접수하여 2021. 4. 13. OOOO지방검찰청에 송부하였다.

## 5. 판단

### 가. 판단기준

헌법 제21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수사 및 형사소송절차는 그 과정 및 결과에 따라 사건당사자의 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어서 사건당사자는 사건진행 경과 및 결과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바,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상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 당사자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한편, 2020. 2. 4.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검·경수사권이 조정되고 검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사건송치 및 이에 관련되는 제도들도 함께 변경되었다. 기존의 경찰의 불기소 의견 송치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내용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별도의 수사 종결행위가 아니므로, 검찰이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수사가 종결되었다.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신청 및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을 통해 다퉴 수 있었고, 경찰의 수사 결과는 검찰에 송치하는 의견에 불과하므로 고소인 등이 경찰의견을 다퉴 필요도 없기에 이를 다퉴 절차도 없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7까지 경찰의 사건 송치 및 불송치 결정, 불송치 결정의 통지,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담은 규정이 신설되어 2021. 1. 1.부터 시행되었고, 경찰은 기존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던 사건을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와 달리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종결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직접 다퉴 수 있게 되었는데, 불송치 결정의 이유는 이러한 이의신청권을 행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정보에 해당한다.

#### 나. 알권리 침해여부

이 사건에서 진정인은 2020. 11.부터 2021. 2. 2.까지 불기소 의견 또는 불송치 의견에 대한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해서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 진정인의 고소사건은 2021. 2. 16.에 일부송치 및 불송치 결정된 것이므로, 불송치 또는 일부송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이전 시점에서는 불송치 또는 일부송치

이유를 알려줄 수 없다는 피진정인의 항변은 이유가 있다.

그러나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은 사건이 종결된 2021. 2. 16.부터 7일 이내에 불송치 또는 일부송치된 취지와 이유를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했어야 한다.

관련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2021. 2. 16. 진정인에게 수사결과를 통지하였는데, 통지서의 결정종류 란에는 송치로 표기가 되어 있고, 주요내용 란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별지에는 “우리 서에서 수사한 피의자 000 등의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 000에 대해 일부 기소 송치, 피의자 000, 000, 000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별지에 기재된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진정인이 각 피의자에 대해서 일부 송치한 근거나 각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에 이른 최소한의 사실관계나 법리상의 해석 등 이유를 알 수 없으므로, 피진정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규정된 불송치 결정의 이유를 알려줄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진정인은 결과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고 해도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의신청권의 행사에도 현실적인 제약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규정된 불송치 결정의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이 사건 행위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피진정인의 소속 지휘감독자인 00000경찰서장에게 진정인 고소사건의 불송치

및 일부송치이유를 신속히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조치할 것과,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를 할 것, 피진정인을 포함한 수사관들에게 불송치 결정시 이유 통지에 대한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이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제도 변경의 초창기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경찰청장에게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사례를 각 경찰서에 전파할 것을 권고한다.

##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7. 22.

위원장 박찬운

위원 임성택

위원 석원정

## <별지>

### 관련 규정

#### 1. 「대한민국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 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53조(수사결과의 통지)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고소인 등”이라 한다)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피의자중지 결정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
- ② 고소인등은 법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통지서로 통지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4. 「경찰수사규칙」

### 제97조(수사결과의 통지)

-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53조에 따라 피의자와 고소인등에게 수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나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처나 소재를 안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한다.

③ 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별지 제103호의 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